

## 취업지원운영위원회규정

제정 : 2011.04.20

개정 : 2013.03.01

개정 : 2014.07.01

개정 : 2020.03.01

개정 : 2021.12.01

개정 : 2023.10.16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재학생과 졸업생의 취업 대책을 계획적으로 수립 및 추진하여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취업지원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3.03.01., 2014.07.01., 2020.03.01.>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3.03.01., 2020.03.01., 2021.12.01.>

1. 기획 및 운영 <개정 2014.07.01., 2020.03.01.>
2. 예·결산 심의 <개정 2014.07.01., 2020.03.01.>
3. 취업지원 프로그램 계획수립·운영·평가·개선 <개정 2014.07.01., 2020.03.01.>
4. 취업률 향상 방안 계획수립 및 추진 <개정 2014.07.01., 2020.03.01.>
5. 취업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및 운영 <개정 2014.07.01., 2020.03.01.>
6. 기타 취업지원에 관한 업무 <개정 2014.07.01., 2020.03.01.>

제3조(구성)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내외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입학학생취업처장이 된다. <개정 2013.03.01., 2014.07.01., 2020.03.01., 2023.10.16.>

② <삭제 2020.03.01.>

제4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위원 유고시 지체없이 결원을 보충한다. <개정 2021.12.01>

제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의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6조(간사)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입학학생취업처 직원이 겸한다. <개정 2020.03.01.>

제7조(기타) 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위원장이 총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시행일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첨 1]

## 취업지원프로그램 평가 지침

■목적 :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매해 평가하고 그 평가내용을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성취도를 확인하여 차기년 취업프로그램의 선정 및 운영에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■평가방법

1. 평가는 연도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 전후에 1회 실시한다.
2. 평가자는 취업지원운영위원회 위원이 한다.
3. 평가는 진행과정 및 결과, 프로그램의 성취도, 만족도 조사 등을 종합평가하여 각 프로그램별로 평가한다.
4. 평가배점은 다음과 같다.

평가 배점	최우수	우수	보통	미흡	비고
	A	B	C	D	평가표기
	3점	2점	1점	0점	평균점수 산출

5. 평가자는 평가를 객관적으로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한다.

### ■평가결과

1. 취합된 평가표는 정리하여 총괄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.
2. 등급별 점수를 숫자화하여 표기한다.
3. 평가의견을 정리하여 별도 표기한다.

### ■평가결과 환류

1. 평가결과가 보통(C등급, 1점)이하인 프로그램은 차년도 사업내용 보완 및 사업제외를 할 수 있다.
2. 평가 결과가 우수(B등급, 2점) 이상인 프로그램은 차년도 사업에 적극 적용하고 사업을 확대 할 수 있다.
3. 취업지원팀은 프로그램별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차년도 사업의 실시 및 예산 배정에 활용 해야 한다.

첨부 : [취업지원 프로그램 평가표]

첨부

[0000학년도 취업지원프로그램 평가표]

일시 :

장소 :

평가자 : 참석위원

평가표

사업구분	사업명	예산	진행률	평가(평균)	비고
역량강화 사업					
노동부					
교비					

평가배점	최우수	우수	보통	미흡	비고
	A	B	C	D	평가표기
	3점	2점	1점	0점	평균점수
평가의견 및 제안					

0000년 0월 0일 작성위원

(인)